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 >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39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복 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총괄 검토	3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3
2. 제정안의 체계	9
3. 총괄 검토의견	13
V. 주요 항목별 검토	23
1. 제명	23
2. 제1장 총칙	26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26
나. 정부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34
3. 제2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체계	37
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37
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와 연구안보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6조 및 제7조)	47
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조사·분석(안 제8조)	58

4. 제3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지원	61
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발굴 및 지정 및 추진(안 제9조 및 제13조)	61
나.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제10조 및 제11조)	66
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관리(안 제12조)	76
5. 제4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조성	81
가. 국제협력 네트워크 연계 협력 강화와 지식·정보의 관리(안 제14조 및 제20조)	81
나.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제15조)	85
다.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 재외공관의 역할, 해외거점센터의 지정(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92
라. 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 지정 등(안 제18조)	99
마.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 규제 개선 및 우수기관 인증(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03
6. 제5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조성	109
가. 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 지정 등(안 제24조 및 제25조)	109
나. 다자간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 활성화 및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등(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115
다.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지원 및 포상(안 제30조 및 제31조)	123
7. 제6장 연구안보 수립	127
가. 연구안보 강화 지원과 전략 수립(안 제32조 및 제33조)	127
나. 국제협력주체의 연구안보 유지 의무(안 제34조)	132

8. 제7장 보칙	135
가. 청문,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135
9. 벌칙	140
가. 과태료	140
10. 부칙	142
가. 시행일(안 부칙)	142

※ 참고자료

1. Lead Agency 모델 개요	144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대통령령)	14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형두의원 등 20인

나. 발 의 일 : 2026. 3. 12.

다. 회 부 일 : 2025. 3. 13.

II. 제안이유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하여 현행 체계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국제협력 관련 계획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최근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대규모화·복잡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동맹국 간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기술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며,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해외 우수 연구기관·연구자의 유치 및 연구안보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자원 확보·배분, 연구안보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를 두며, 전략위원회 산하에 연구안보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 계속비 편성·세출예산 이월 등 재정 특례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관리·평가 절차의 간소화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및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5조).
- 마. 해외 우수 연구기관·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주거 안정 지원, 사증발급 절차 완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 바. 정부가 연구안보 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하고 연구안보 전략을 수립·시행하며, 국제협력 수행기관은 연구안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임직원 중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예정된 사람에게 연구안보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IV.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비용 절감과 위험 분산, 그리고 전 지구적 효율성 제고라는 세 가지 이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ICT, AI 등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 개별 국가의 단독 투자만으로는 경제·사회·기술적 리스크를 떠안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핵심 배경은 과학기술이 정보재(Information Goods)라는 점에 있음. 과학기술이라는 재화를 생산하는 초기에는 막대한 투입이 필요하지만, 일단 지식이 생성되면 이전·확산과 소비의 추가비용은 극히 낮음. 또한 정보재의 산출량은 생산 주체 수와 무관하게 일정하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비경합성(Non-Rivary) 특성 덕분에, 다자 협력을 통해 개발비를 분담하고 성과를 공유할수록 체계 전체의 효율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즉, 정보재인 과학기술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과학기술과 같은 정보재는 기술적으로는 배제가 어렵지만, 지식재산권·암호화·계약으로 배제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어, 해당 기술의 창출자에게 독점적 지대를 허용할 여지가 있어,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경쟁 국면에서는 전략적 우위의 기반이 되기도 함. 따라서 국제협력은 비용·위험을 함께 줄이는 장치이자, 동시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정교하게 조율해야 하는 장치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현대 과학기술 분야는 AI, 기후 위기나 신종 감염병 해결과 같이 국제적 공동 이슈 해결과 관련된 경우가 많고, 과학기술 분야의 세분화 및 전문화로 인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연구자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임.¹⁾

이로 인하여 미국, EU 등의 국가들은 2000년대를 전후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의 비중이 단독 연구 비중을 추월하였고 꾸준히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²⁾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국제협력 연구개발 예산이 2023년 2,569억 2,500만원에서 2024년 1조 1,335억 2,300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341.2%가 증액되었고, 신규 사업도 2023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4년도에는 8,972억 9,700만원이 편성되어, 국제협력 관련 연구개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제협력 R&D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율
합계	256,925	1,133,523	341.2
신규사업	-	897,297	순증
계속사업	256,925	236,226	△8.1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과 개선방향」, 2022.10.20, 국회입법조사처

2)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글로벌 패턴과 한국의 현황」, 2021, KISTI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R&D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은 지표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경쟁우위가 부족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항목별로 분석한 KISTEP의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은 OECD 36개 국가 대비 “연구개발투자(2위)”, “인적자원(5위)”, “조직(5위)” 항목은 상위권에 속하는 반면, “국제협력(34)” 항목은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음.

<2022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 항목별 순위*>



* 순위는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순위를 의미함.
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KISTEP, 22.9.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국제 연구개발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국내 연구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수행되는 국제협력 R&D 추진 방식의 문제점과 충분하지 않은 유인체계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얹혀 있다고 보임.

특히, 여러 분야에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뒷받침해야 할 과학 기술 국제협력 관련 법·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 장애로 지적되고 있음.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연구자의 요구에 비해 국내의 법·제도적 거버넌스가 부족한 면이 있어, 현장의 협력 수요와 정책 수단 사이에 괴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³⁾가 있으며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이 있음.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서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과학기술공동위원

3)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2.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4. 연구개발 시설·장비,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6.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7.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의 구성, 개발도상국가 지원, 국내 과학기술자의 외국인 파견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⁴⁾

그러나,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실질 사항을 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규범력이 제한되고, 범부처 차원의 총괄 규범으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한편, 이를 「과학기술기본법」에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해당 법률이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제협력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률 본문에 과도하게 담는 것은 기본법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동 제정안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과학기술의 전략적 우위 선점을 위하여 국가 간 과학기술 국제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수준이 낮은 문제점의 해결 필요성과 현행 과학기술 국제협력 규정의 범부처 총괄 규범으로서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을 법률로써 정의하고, 현행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일반적인

4)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
3. 주요 전문분야별 기술조사단의 상호 파견 및 공동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6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보임.

특히, 동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동 사업 및 과제에 지원 특례(안 제9조 ~ 제12조)를 부여하도록 하여 국내 연구개발과 다른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감안한 국가 간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성과 확산과 해외 현지 지원을 위해 국제협력혁신 허브 및 해외거점센터 연계 강화, 통합 지식·정보 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등 기반 강화를 추진(안 제16조, 제19조~제21조, 제23조)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관련된 인력양성, 혁신허브 등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아울러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 해외 우수 연구자·연구기관 유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의 우수한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제정안의 체계

제정안은 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2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체계(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3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지원(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4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조성(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제5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제6장 연구안보(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7장 보칙(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8장 벌칙(제38조)을 포함한 총 3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총칙 부분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체계적 구축과 촉진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국민경제 발전·국제사회 기여를 목적(제1조)으로 함을 밝히고 있음.

이어서 추진체계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할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조 및 제6조).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특례 측면에서는 장관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과제에 지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인프라·기반 강화로는 성과 확산과 해외 현지 지원을 위해 통합 지식·정보 플랫폼, 국제협력혁신허브·해외거점센터 연계,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활성화 촉진 분야에서는 외국 정부와의 협력, 해외 우수 연구자·연구기관 유치 근거 마련, 국제기구 및 국내 주체별 활동 지원 등 구체적인 촉진 방안이 규정되어 있음(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다음으로 연구안보 장을 두어 국제협력 과정에서 국내 연구생태계 보호와 신뢰 기반의 협력을 위한 연구안보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정안의 조문 체계>

구분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체계	제5조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 설치
		제7조	연구안보특별위원회 설치
		제8조	과학기술 국제협력 조사·분석 등
제3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지원	제9조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제10조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제11조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특례 등
		제12조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관리
		제13조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 발굴
제4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조성	제14조	국제협력 네트워크 연계 협력 강화
		제15조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제16조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
		제17조	재외공관의 역할
		제18조	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 지정 등
		제19조	과학기술 국제협력 해외거점센터의 지정
		제20조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
		제21조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제22조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규제 개선
		제23조	우수기관 인증
제5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제24조	외국정부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
		제25조	기업·대학·연구소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제26조	다자간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 활성화 등
		제27조	과학기술 국제규범 및 표준
		제28조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제29조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치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제31조	포상

제6장	연구안보	제32조	연구안보 강화를 위한 지원
		제33조	연구안보 전략 수립 등
		제34조	국제협력주체의 연구안보 유지 의무
제7장	보칙	제35조	청문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38조	과태료

3. 총괄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전략위원회로 범부처 조정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제공동 R&D 지정·특례를 통해 국제 연구개발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법률에 근거한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절차·특례·연구 안보 등을 명시함으로써 협정 체결과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외우수기관과의 장기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통합지식·정보 플랫폼과 혁신허브·해외거점 구축을 통해 파트너 탐색 - 매칭 - 성과 확산을 하나의 연속선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거래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플랫폼·허브 기반으로 데이터·성과의 개방·공유 원칙을 분명해짐에 따라 성과 확산, 부처 간 중복투자 방지 등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해외거점과의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 발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현지 과학기술 네트워크 확장, 해외 동향 분석, 인력 교류 등을 패키지로 추진함으로써, 국가 전략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국제공동연구에서 이슈가 되는 소유권 비율, 해외 연구자에 대한 체류 지위와 지원 부분, 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를 통한 외교적 갈등 소지 해결 등 핵심 리스크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신뢰 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제정안은 현행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법령 가운데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의 많은 내용을 상위 법률로 통합·조정하는 상향 입법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기존의 대통령령 대비 규범력과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임. 아울러 외교부 등 전 부처에 적용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기본법적인 법률 체계가 마련되어 범부처 조정력과 정책 정합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동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동 제정안이 지향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필요성은 분명하나, AI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된 현 시점에서는,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이 구조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특히 각국이 전략산업으로 인식하는 기술 분야의 경우,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배타적 기술 보유 경향이 강화되면서, 실제 협력이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제약되는 사례

가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AI 분야에서 미 상무부 승인하에 Microsoft가 UAE로 엔비디아 고급 GPU 6만장(Grace Blackwell 포함)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안보·감독 조건을 전제로 한 제한적 허용이 발생한 바 있으며, 미국의 AI 칩 수출규제로 H100/A100 등이 제한되며, 중국용 H20/H800의 생산·출하가 중단·재개를 오가는 등 연구개발 뿐 만 아니라 각 국가 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수준에서도 강력한 규제와 통제가 발생하고 있음.

○ 둘째, 동 제정안의 내용은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 여러 부처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동 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각 부처의 역할과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예를 들면, 동 제정안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연구인력·기술·재원 등 유형·무형 자원을 활용한 국제 교류와 진흥을 포괄하며, 대외적으로는 외국과의 협력을 위해 정부 간 협의체를 마련하거나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는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어, 현행 「정부조직법」⁵⁾상 외교부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5) 「정부조직법」 제33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 제24조가 외국정부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역할로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다양한 부처와의 연계·협력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동 법안의 제정 사유 중 하나라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행정안전부는 동 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여러 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위원회나 헌법상 국가기술자문회의 등 기존 기구와 기능이 유사·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규 위원회 설치보다는 기존 위원회의 활용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심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셋째, 현행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와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이미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동 제정안의 중요한 의미

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중 하나는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을 통해 국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데 있는 것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와 조건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수범자에게 혼동을 주기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제정안에서 제시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관련 특례는
국외에서 국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경우 국내 연구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평가·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
고 있음.
- 이러한 특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나, 국가 재정이 투입
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 시에 특례 적용 범위와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성과관리 체
계의 엄정성이 떨어지고 재정 운용의 규율성이 훼손될 수 있음.
- 즉, 제도적 효율성과 유연성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
면, 정부 예산인 공적 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희석될 수 있
다는 점에서, 특례 적용 범위와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심
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실질적으로는 국내 연구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정
안에서 부여하는 특례의 혜택을 얻기 위해 형식상 국제공동연

구 형태를 갖춘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이러한 형식적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 제정안에서 명시된 사업의 실질적 국제협력 여부를 명확히 검증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의 제도개선이 다른 연구개발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해외 연구자 유치 등 다양한 부문에서 특례를 부여하여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 자원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긍정적이나, 국외 연구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이 국내 연구 분야를 포함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제정안을 통해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국내 연구개발사업과의 역할 분담 및 정책 자원과 재원의 배분 등의 균형 유지 방안에 대한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섯째,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사항을 법률 차원에서 규율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입법 방

식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동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법률로 신설하는 경우,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명확히 부각하고 관련 정책·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별도의 법률 제정으로 인한 기존 법률과의 조문 간의 정합성 부족, 중복적 규제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새로운 법률의 제정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관한 기존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의 충분한 내용 보완 등의 개정을 통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동 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고, 개방성·다양성·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큰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는 국내 연구환경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국제협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패권경쟁과 기술 블록화 심화로 연구안보와

국가안보를 고려한 전략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므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동 제정안의 관련 부처인 **외교부**는 업무 효율성 제고와 법체계의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특히 외교부 등과 업무 중복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정비·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현행 법령으로 충분히 적용·운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기보다 기존 법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외교부의 의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패권 대응, 연구안보 강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체계적 대응과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신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고, 기존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법령은 국내 연구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법체계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철학과 원칙 하에 기초, 이공계 인력, 양자, 핵융합 등 주요 분야별로 개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국제협력 제반 사항을 단일 법률 내 상호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조정력을 확보하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각종 특례를 통해 국제 연구개발의 특성에 맞는 사업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으며,

통합 지식·정보 플랫폼, 혁신허브 및 해외거점 구축을 통해 파트너 탐색부터 성과 확산까지를 연계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 발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현지 과학기술 네트워크 확장, 해외 동향 분석, 인력 교류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협력 관련 거래비용 절감과 국가 전략기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기존 대통령령 중심의 국제협력 규범을 상위 법률로 통합·정비함으로써 규범력과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 국제협력의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다만, 첨단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과 규제 강화로 국제공동연구가 구조적으로 제약되는 현실, 외교부·산업부·중기부 등 타 부처와의 연계·협력 문제, 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문제, 국내 연구개발과의 균형유지 문제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별도 법률 제정 외에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조정·보완하는 과정을 전제

로 할 때 동 제정안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V. 주요 항목별 검토

1. 제명

1)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명으로 하고 있음.

2) 검토의견

- 제명은 법률의 고유한 명칭, 즉 법률의 제목을 의미하며, 그 표현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고, 법률의 주요 내용과 성격을 적절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함.⁶⁾
- 동 제정안은 제명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법률안의 주된 목적이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활성화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특례 규정 뿐 아니라,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안보 강화, 연구성과의 소유권 규정, 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 지정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취지를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명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법제이론과 실제, 법제실, 2019, p.102

- 특히, 동 제정안 제4조⁷⁾에 따르면,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 제정안이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이라는 제명은 법안의 전체 취지와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제명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법률안’ 또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과 같은 명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법률안의 적용 범위와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명이 규율 대상의 실질적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은 제명을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동 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체계 구축 및 촉진 지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동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은 제명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사용하고 있으나, 제정안이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필요한 특허·연구안보·소유권 규정 등 기본법적 성격의 내용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제명이 법안의 전체 취지와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제1장 총칙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체계 구축 및 촉진 지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제사회 공헌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제협력 수행기관”,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 “연구안보”의 등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 국제협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 기관·법인·단체·개인(이하 “국제협력주체”라 한다)이 외국정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의 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이하 “해

제 정 안

외기관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류, 정보 교환, 기술이전,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제협력 수행기관”이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

3.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 정 안

4.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란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5. “연구안보”란 국내외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가·경제 안보 위협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관리하여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고,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생태계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2) 검토의견

- 안 제1조는 동 제정안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요약한 것이고, 제2조는 동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음.
-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1조 목적 조항에서 규정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등의 효과는 여러 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로 표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른 법률의 목적 조항 입법례에서도 과학기술 또는 특정 분

야의 진흥·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표현을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타 법의 목적 조항 중 ‘국가경쟁력 강화’ 입법례 >

법률명	조항	내용
「국가표준기본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 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u>국가경쟁력 강화</u>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u>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u>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u>국가경쟁력 강화</u>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u>국가경쟁력을 강화함</u> 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 4.

- 둘째, 동 제정안 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교류, 정보교환, 기술이전,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일련의 과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협력의 범위를 과학기술 분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인력양성 및 교류’나 ‘정보교환’ 등의 활동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아, 동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일부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구체적으로 ‘국제협력주체와 해외기관등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류’ 라는 부분을 ‘국제협력주체와 해외기관등과 협력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류’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셋째, 안 제2조제3호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의에서는 외국정부 또는 해외연구기관과 비용·인력·시설·장비·정보 등의 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는 연구사업이라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예산 또는 기금을 투입하면서 국제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 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⁸⁾에서는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부 등이 연구개발

8)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는 국제공동연구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인재유치 등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국제협력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므로, 동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제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 용어 개념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넷째, 안 제2조제5호의 ‘연구안보’ 정의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법격인 동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연구안보는 과학기술의 국제협력과 관련한 R&D 등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연구개발 과정, 나아가 국가 과학기술 활동 전반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취지를 전체 R&D 및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기본법인 「과학기술기본법」 또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의 경우 NSF⁹⁾에서는 국가 R&D에 대한 연구안보를

9)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미국국립과학재단)

담당하는 연구안보전략정책실(OCRSSP¹⁰)을 두고 있음. 해당 기관은 주요 기능으로 정책지원, 자료제공, 인식개선, 교육, 정보공개, 위험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R&D 뿐만 아니라 전체 R&D를 대상으로 연구안보 강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미국 연구안보전략정책실의 주요 기능>

구분	주요 기능
정책지원	○ 연구보안 정책 이슈를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식별 및 대응
자료제공	○ NSF에서 지원하는 연구보안 및 무결성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자원 제공
인식개선	○ 연구 정책, 보안 위험, 지식재산 보호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교육	○ 잠재적 보안 위험 평가 관련 NSF의 프로그램 관리자와 타 부서 직원 교육
정보공개	○ 자금 신청자 및 수혜자에게 요구사항 공개 및 보고
위험평가	○ 정부 누락 점검을 위해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제안서 및 선정 내용에 대한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수행
부처간 협력	○ 타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의 무결성을 위협하는 보안 위험을 식별·소통·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수립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R&D 보안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2.

- 영국은 과학혁신기술부 산하 특별기구(정부 부처)로 연구협력 자문팀(RCAT¹¹)을 두고 있으며, 해당 팀은 ① 국제연구협력 시 국가안보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 ② 기관 연구문화 지원 및

10) Office of the Chief of Research Security Strategy and Policy

11) Research Collaboration Advice Team

연구보안 인식 제고, ③ 정보수집 및 공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¹²⁾. 영국의 경우에도 연구안보 담당 기관이 국제협력 R&D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R&D에 대한 연구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안보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에서 주로 논의되는 개념이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기본법적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동 제정안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의 정의 및 목적 규정과 관련하여, 목적 조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특정 분야로 한정할 필요성,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범위가 과학기술 분야로 한정된다는 점의 문언상 명확화 필요성,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의의 명확화, 그리고 연구안보의 개념을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R&D 등에 한정하여 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12)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2023) RCAT Update August 2023. DSIT

나. 정부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공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안보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과 개발도상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기반 국제개발협력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제협력주체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제협력주체는 국제협력 과정에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연구성과 등이 부적절하게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장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지원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협력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2)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공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음.
-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동 제정안 제4조제1항은 해당 법률안의 취지에 맞추어 다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의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포함한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기본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제3조¹³⁾는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상위 기본법임을 선언하고 있음.

13) 「과학기술기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이로 인해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 두 법률의 취지에 모두 맞추어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체계상 우선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협력주체에게 유리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연구자나 기관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수범자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안 제4조는 법률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과학기술기본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상 우선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다른 법률 적용이 ‘유리한 경우’의 기준도 수범자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3. 제2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체계

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5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는 국제협력 방향, 제도개선, 자원 확보, 인력·기관 교류, 연구안보 등이 포함되도록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활동 규제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국제협력 자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연구 인력·기관의 국제교류 및 해외 우수연구인력·기관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5. 국내 연구기관·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정책 및 제도 전수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 국제규범 및 표준 정립에 관한 사항
 9. 연구안보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제6조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 정 안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단기적 사업 단위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연계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전략 수립과 부처 간 협업 체계를 제도화하였으며,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연구안보, 인력 교류, 자원 확보 등 국제협력의 세부 요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로 정착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그 입법 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다만, 동 제정안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기본계획¹⁴⁾에는 이

미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등 동 제정안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과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동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국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기본계획 간에 정책 방향이나 추진 우선순위가 명확하도록 관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제정안이 우선 적용된

14)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 15의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다고 명시된 ‘국제협력 연구개발 지원’ 분야 외의 영역에서 두 계획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정책 협의를 통해 혼선과 행정적 중복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동 제정안의 관련 부처인 **외교부**는 안 제5조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은 「과학기술기본법」의 계획·시책으로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외교부의 의견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제정안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 네트워크 구축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바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제정안은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위상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상호 연계 및 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계획 간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기본계획이나 타 부처의 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예를 들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실행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핵예방법」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타 법상 시행계획의 평가·반영 관련 입법례>

법률명	조항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9조제4항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 <u>지능정보화 기본법</u> 」 제6조에 따른 <u>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u>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u>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u> 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결핵예방법」	제5조제3항 (결핵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생략)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u>지역보건의료계획</u> 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산수리 등 의 계획 수립)	○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u>자연유산 보호계획</u> 과 연계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 4.

○ 둘째, 동 제정안 제5조제2항제6호의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정책 및 제도 전수에 관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ODA 관련 사항으로 보이는 바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15)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유상의 개발협력 활동을 의미하는데, 동 제정안의 개발도상국 대상 과학기술 협력, 기술이전, 제도 전수 등의 내용이 이러한 국제개발협력¹⁶⁾ 사업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업무 소관과 기능 분담에 대한 정부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동 제정안의 관련 부처인 기상청은 “과학기술”은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의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그 범위가 매우 넓어 기상청 소관의 기상·기후 기술을 비롯한 여러 부처의 소관 기술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고, 이미 기상청은 연구개발 협력, 개발도상국 지원, 국내 기상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기상·기후 관련 국제협력을 활발히 수행중이며, 정부(관계부처 합동)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¹⁷⁾을 수립·이행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정안의 기본계획은 국가

16) 국제개발협력의 총괄은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음.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3.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4.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획
5. 지역별·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6.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연구안보 강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기업 해외진출, 우수 연구자 유치 등 국제협력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전략으로서, 인도주의적 가치와 상생 실현을 목적으로 소관 부처의 공적개발원조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는 상이하다는 입장임.

○ 셋째, 동 제정안 해당 부분의 시행계획은 다른 법률의 시행계획 관련 입법례와 같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적절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본·시행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와 문제점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즉,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전반에 걸쳐 <수립 - 시행 - 평가 - 환류>의 단계가 적절히 작동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타 법률 시행계획의 평가·반영 관련 입법례>

법률명	조항	내용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국방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5항 (연차별 실시계획)	○ 특구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며, 특구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4항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 4.

○ 넷째, 동 제정안에서 규정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헌법 제127조¹⁸⁾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위원회 간 심의 대상 및 절차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인력의

18)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양성이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¹⁹⁾되어 있으므로, 동 제정안에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분야 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심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위상 및 관계의 명확한 정립의 과제가 남아 있으며, 개발도상국 대상 과학기술 협력은 ODA를 규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의 소관 중첩 소지로 인한 기능 분담의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환류 구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 심의 가능성도 존재하는바, 계획 간 연계·조정 절차의 명확화와 제도적 정합성

1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확보가 요구됨.

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와 연구안보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6조 및 제7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6조 및 제7조는 국무총리 소속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가 국제협력의 기본계획·제도·연구안보·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을 심의·조정하며, 연구안보특별위원회를 두어 연구안보 정책과 위협 대응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연구안보 특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6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의 설치) ①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연구안보와 관련된 정부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략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된다.

⑥ 전략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⑦ 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안보특별위원회 설치) ① 연구안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 산하에 연구안보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관한 사항
2. 연구안보 전략과 정책·제도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주체의 연구안보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연구안보와 관련된 국가 간 협력 및 국제 원칙·절차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연구안보를 위하여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연구안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제1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력 수행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국제협력 수행기관은 그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관리·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전략위원회를 두어 부처 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었던 국제협력 사업의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연구안보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국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정보보안 등 국가안보 관련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타 법에 따른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의 등)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의 기능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위원회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특히 위원회 간 기능 중첩이 우려되는 부분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임.

○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제1호²⁰⁾ 및 제2호²¹⁾에 따라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

2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

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2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마.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자.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차.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파.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하.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거.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너.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술혁신 등에 관련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 과정에는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이미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 제정안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와 기능의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양 위원회가 동일한 제도에 대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상호 권한 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심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둘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중복 위원회 설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다.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며.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어.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²²⁾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의 경우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와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중복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심의회의 기능을 확대·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연구안보특별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연구안보는 국제협력에 관련한 연구개발 등뿐 아니라 국내 연구개발을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서도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전체 과학기술 분야의 기본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예를 들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22년부터 국가정보원 발주 R&D 과제에 참여한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연구원이 보안문서 암호를 임의 해제하고, 대량의 연구자료를 개인 PC에 다운

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드하고 외부 인터넷망 연결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하는 등²³⁾ 국내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연구안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가 있음.

- 국가·경제 안보 위협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관리하여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는 연구안보는 국가 간(또는 국제기구 공동) 연구개발 등에서만 아니라, 국내 연구개발에서도 연구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그러나 동 제정안은 국제협력과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므로 국제협력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내 연구개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연구안보 개념을 전체 과학기술 분야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이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해당 위원회를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넷째, ‘과학기술국제협력전략위원회’와 ‘연구안보특별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 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두 위원회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및 연구안보 정책을 실질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를 단순한 일반

23) TJB 뉴스, “‘국가 정보 관리 곳곳에 구멍’… KAIST ‘국정원 연구 자료’ 유출 수사”, 2025. 9. 29., <https://www.tjb.co.kr/news06/bodo/view/id/85346?utm>

적 표현으로 둘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연구안보,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에서 ○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구체화하거나, 기술적 특성상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기 어렵다면 하위 법령에서 세부 기준을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등 자격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동 제정안 제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연구안보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대한 연구안보 위협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국제협력 수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정 요구를 국제협력 수행기관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특히, 안 제2조제2호²⁴⁾의 국제협력 수행기관에는 사립학교, 회사나 법인·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에서 요청하는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여섯째, 동 제정안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구안보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에 관한 제6조제7항²⁵⁾과 같이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제협력 수행기관”이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제정안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 네트워크 구축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규정하고자 하는바,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해 해당 위원회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산하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연구안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의 ‘연구안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제정안의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동 개정안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주요 정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자문 위원회로 보인다고 설명함.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법상 그 심의 대상에는 국제협력 관련 내용도 포함²⁶⁾되어 있는

25) 제6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 설치) ⑦ 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만큼, 해당 위원회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업무상 중복이 없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²⁷⁾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동 제정안의 관련 부처인 **외교부**는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안 제6조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 안 제7조의 연구안보특별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동 제정안의 관련 부처인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국제협력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기보다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과기부총리 소속으로 조정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은 국무총리 소속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와 연구안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제협력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연구안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중복 위원회 설치 제한, 연구안보에 관한 사항의 규율 방안, 위원 자격·소위원회 구성 기준의 불명확성, 시정 요구의 실효성 부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2.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7) 행정안전부는 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로 ‘글로벌R&D위원회’도 기 설치되어 있으며, ‘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24.6월)’ 등을 심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조사·분석(안 제8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8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분석의 범위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8조(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조사·분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료 제출 및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체계를 정책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에 타당성이 있음.

○ 다만,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후에 해당 계획의 실행을 위한 시행계획이 안 제5조제5항²⁸⁾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시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외에 시행계획을 위해서도 조사·분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8조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모두에 있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²⁹⁾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3조³⁰⁾의 입법례를 참고

28) 제5조(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3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할 수 있다고 보임.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 해당 부분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데이터에 기반해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및 협조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위해서도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료 요청 범위를 기본계획뿐 아니라 시행계획까지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정보체계의 구축
4.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4. 제3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지원

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발굴 및 지정 및 추진(안 제9조 및 제13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9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부를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세부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13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한 연구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외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력사업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9조(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정의 변

제 정 안

경·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정·변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 발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를 발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업 및 연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연구안보, 인력 교류, 자원 확보 등 국제협력의 세부 요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로 정착시키는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법 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특히, 기존에 하위 법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³¹⁾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의 개념을 확대하여 상위 법률에 명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공식 지정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를 임의적·개별적 사업이 아닌 국가 전략사업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려는 의의도 함께 지니고 있음.
- 다만, 동 제정안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동 제정안에 별도의 수요조사 규정이 없더라도,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

3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이는바,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요조사를 통한 관련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³²⁾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의제4호³³⁾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과제’는 정부 예산이나 기금으로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수요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므로, 제정안과 같이 수요 발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기존 법률에 따른 수요조사 절차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임.

○ 둘째, 동 제정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용어는 「국가연구개발

3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4.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절차,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의 세부 내용과 제4항에 따른 공모 및 선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란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혁신법」 제2조제1호³⁴⁾에 따라, ‘중양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정의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원용할 필요가 있음.

- 동 제정안의 관련 부처인 **외교부**는 해당 부분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이에 근거한 시행령 등에 추가할 사항으로 별도의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외교부의 의견에 대해 동 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제정안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 네트워크 구축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바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은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의 특례를 부여함에 있어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지정·관리하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기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관계, 용어의 명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정합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므로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3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양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제10조 및 제11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0조는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특정평가를 받는 경우 자체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1조는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시급하거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공모 없이 지정·선정할 수 있고, 국제협력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연구자를 우대할 수 있으며, 국외 절차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국내 평가 및 관리 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 기준과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 특례를 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0조(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특정평가 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특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이하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라 한다) 중 국가정책적으로 중요하고 국제협력의 시급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라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국제협력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리 및 평가 절차(이하 “연구개발과제절차등”이라 한다)에 준하는 수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외 선정, 수행 관리 및 평가 등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경우에는 국내 연구개발과제절차등을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국제협력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안 제10조는 다년도 투자가 필요한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 이월 등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장기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중복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과평가 절차를 합리화하여 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 그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안 제11조는 국제협력 과제가 정책적 시급성이나 전략적 중요성을 지닐 경우, 공모 없이 지정·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수 연구자 및 기관 우대, 국외 절차의 인정, 평가·관리 절차의 간소화 등을 허용함으로써, 국제협력 과제의 신속한 착수와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 간 연구환경의 차이와 시차를 고려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국제적 호환성(compatibility)을 높이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임.
-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10조제1항은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³⁵⁾의 특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경우 같은 법 제7조의 자체평가³⁶⁾

3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5.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특정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를 면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조제4항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이미 일부 사업군(다부처, 혁신도전 등)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자체평가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자체평가 면제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10조제3항은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8조37)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가 제6조제1항의 사업 전략계획과 제2항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7)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해당 조항은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추진 특성상 해외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이 지연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종료에 맞추어 무리하게 상대국과 협상 진행 시 협상력 저하로 이어져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상대국의 사정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 이월 사유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당 조항은 모든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이 일률적으로 이월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 사정, 협상 지연 등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의 특례가 악용될 경우, 이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이월은 해당 재원을 긴급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다른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여 기회비용의 손실을 초래하고, 이는 곧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경직성 및 종국적인 입법부의 재정통제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공동연구사업인 ‘국가간협력 기반조성’ 연구개발 사업³⁸⁾의 협약 체결일을 살펴보면, 2024년

38)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동 제정안 시행 시 해당 사업에 포

도 신규 연구과제 142개 중 37개의 과제가 4/4분기 이후(10월 이후)에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2025년도 신규 연구과제 117개 중, 10월 22일 기준 53개 과제가 4/4분기에 계약되었거나 아직 미체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제정안과 유사한 성격의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 실제 연구개발 착수가 다음 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국가간협력기반조성 내역사업별 신규과제의 협약 체결 현황>

(단위: 개, %)

연도	내역 사업	신규 과제	협약 체결 시점				예산 편성
			1~3분기 (A) (9월 말)	4분기 (B) (10월 후)	미체결 (C)	비율 [(B+C)/ (A+B+C)]	
2024	공동연구	55	21	34	-	61.8	1~12개월
	인력교류	64	62	2	-	3.1	3~12개월
	협력센터	6	5	1	-	16.7	12개월
	협력활동	17	17	-	-	-	12개월
	소계	142	105	37	-	26.1	1~12개월
2025. 10. 22.	공동연구	105	52	38	15	50.5	3~12개월
	인력교류	9	9	-	-	-	3개월
	협력센터	2	2	-	-	-	6~12개월
	협력활동	1	1	-	-	-	12개월
	소계	117	64	38	15	45.3	3~12개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이러한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외적인 이월을 모두 허용하는 경우,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함된 연구과제 상당수가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월에 대한 특례 규정은 국제협력의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셋째, 안 제11조제3항은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평가·관리 절차가 국내 절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외 선정, 수행관리 및 평가 등을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정을 통해 국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즉,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적 평가·관리 체계가 이미 확보된 경우, 이를 국내 제도와 상호 인정하여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해당 조항과 같이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Lead Agency³⁹⁾<참고 1. Lead Agency 모델 개요 참조> 모델 방식이라고 함. 이 모델은 국가 간 중복평가를 방지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때 간소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 수행관리 및 평가 절차라고

39) “**Lead Agency**”란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과학기술 협력사업에서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연구지원기관을 의미하며, Lead Agency로 지정된 기관이 접수, 평가, 사업관리 등을 총괄함. Lead Agency는 국제공동연구의 평가 및 선정 관련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이에 따라, 국가간의 공동연구의 경우에도 한 국가의 연구개발에 대한 여러 평가와 관리 절차만이 적용되게 됨.

명시하고 있어, 이 내용이 공모, 선정, 협약, 평가, 관리에 한정된 조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2장인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 규정된 공모, 선정, 협약, 평가, 수행 관리 외에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연구성과의 소유·관리, 성과 활용, 기술료 징수 및 사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만약, 간소화 대상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을 모두 포괄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본 원칙인 성과의 공공성 확보 및 기술료를 통한 국가 환수 체계 유지 등과의 정합성 측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정안의 특례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간소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절차는 선정, 수행 및 관리, 평가로 한정할 수 있으며, 필수 관리요소 중심으로 Lead Agency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또한, 국제공동연구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연구개발사업에는 인정되지 않는 이러한 특례 조항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법 체계적 정합성과 재정 운용의 책임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동 제정안의 관련 부처인 외교부는 특례에 관한 부분은 「과학

기술기본법」과 이에 근거한 시행령 등에 추가할 사항으로 별도의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외교부의 의견에 대해 동 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제정안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 네트워크 구축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바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에 대한 특례 조항은 현행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우선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기본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은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해 예산 이월, 평가·관리 절차 간소화, 지정·선정 특례 등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다만, 특정평가를 이유로 자체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의 입법 실익과 특례에 대한 범위 명확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도 적합성과 재정 책임성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관리(안 제12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2조는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와 관리 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 성과의 소유는 참여기관의 기여도(연구개발비, 인력 투입 등)를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며, 국가안보·공공이익·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를 국가 소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 연구기관이 실시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2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관리) ① 국제협력 수행기관이 해외기관등과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연구개발성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의 연구개발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여도는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투입한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제 정 안

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한민국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실시권을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와 실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연구성과의 소유·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협력 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국가의 공공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제협력 연구개발은 여러 국가와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성과의 소유권·활용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비율을 참

여 기관의 기여도(예산·인력 등)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가안보나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성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동 규정은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관리 체계를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특성에 맞게 반영·조정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내 연구기관이 연구성과의 실시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성과가 국내 연구개발 생태계로 환류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봄.

○ 다만,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3항⁴⁰⁾이 국내·국외를 포함한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을 이

4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유로 국가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제협력 R&D 과제도 이미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안 제12조제3항에서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별도의 소유권 규정을 두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지, 중복 규정이 되어 입법 실익이 낮은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2조제3항은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 기관의 기여도(연구개발비·인력 투입 등)에 따라 연구성과의 소유권을 결정하되,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협력기관 간의 공정한 기여도 원칙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국가적 이익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성과의 국가 귀속을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을 함께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법률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3항은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공공성 등 동 제정안과 유사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⁴¹⁾하고 있어 별도 규정의 입법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12조제3항의

41) 동 제정안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3항의 연구개발성과 국가소유 사유는, 해당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리 공지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언제를 의미하는지, 즉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어느 단계에서 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보임.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은 국제협력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으나, 국가안보·공공이익 등을 이유로 국가 소유를 인정하는 내용은 이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규정의 입법 실익과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미리 공지’의 시점 등 적용기준도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제4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조성

가. 국제협력 네트워크 연계 협력 강화와 지식·정보의 관리(안 제14조 및 제20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4조는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하여 다양한 협력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0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협력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와 활용을 위해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하며, 플랫폼 구축·운영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 정 안
제14조(국제협력 네트워크 연계 협력 강화) ①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제협력 수행기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국내외 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와 관련 정보의 연계를 제도화하여 국제협력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기반을 데이터 중심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안 제14조는 정부가 분산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외교 역량과 국제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법 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안 제20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협력 관련 지식·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이를 통해 협력 정보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책 수립·평가·성과 확산을 위한 근거 데이터 체계(evidence base)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20조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자 개인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 연구자나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타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른 법률상 자료 제출 요청 권한 관련 조항 사례>

법률명	조항	내용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8조제2항 (실태조사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업자 , 기업, 협회 및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연법」	제12조의7제3항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운영자 , 안전진단기관, 공연안전지원센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33조(자료제출)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사실조사 등)	○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 4.

- 예를 들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8조제2항에서는 실태조사
를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3조 역시 건축서비
스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공연법」
에서는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공연장운영자
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은 국내외 과학기술 협
력 네트워크와 관련 정보를 제도적으로 연계하고 통합 플랫폼
을 구축하여 국제협력 정책을 데이터 기반으로 강화하려는 취
지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지식·정보 플랫폼 운영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이 기관·단체에 한정되어 개인 연구자 등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제15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5조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진흥원을 설립하며, 법인격을 부여하고 등기를 통해 성립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진흥원이 기본계획 수립 지원,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성과 확산,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외 연구기관 및 인력 유치, 연구안보 관련 조사·연구 등 국제협력 전반의 정책·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5조(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및 사업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국가별·기술별 협력전략의 수립 지원
2.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활동 규제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지원
3.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조사·분석 및 지식·정보의 관리 지원
4. 양자·다자간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지원

제 정 안

5. 국내외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연계·협력 강화 지원
 6.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 확산 등에 관한 업무 지원
 7. 국제협력혁신 허브 및 해외거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8. 해외 우수 연구기관·연구자의 유치에 관한 업무 지원
 9.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지원
 10. 연구안보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및 관련 사업 지원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전담·전문화된 조직을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임.

- 그동안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여러 부처와 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정책의 분산, 협력 중복, 예산 비효율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해당 조항은 국제협력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여, 정책 기획·관리·평가·성과 확산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음.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여러 기존 기관들이 이미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관 간 업무 및 재정지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도 검토가 필요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SW 국제협력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정보화 컨설팅 및 글로벌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정보통신·방송 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사업을 통해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글로벌 ICT 전문가 풀 운영과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기반 강화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음.
- 또한, 한국연구재단은 국제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지원,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 수립 및 해외거점 및 전략적 협력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어, 동 제정안에서 명시한 많은 과

학기술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도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주요 기능>

기관명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주요 기능	소속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융합서비스 글로벌 마케팅 사업을 통해 국가간 협의체 운영, 해외시장 진출, 파트너 연계 지원 ○ SW 국제협력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정보화 컨설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 정보통신·방송 기술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사업을 통해 국제협력 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 글로벌 ICT 전문가 Pool 운영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 디지털정부 국제개발협력 실무자 교육 등 국제협력 인력 양성	
한국연구재단 (NRF)	○ 국제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지원: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자 간의 공동세미나 · 국제공동연구과제를 통해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 수립: 국가별·기술별 협력전략 수립,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지원 ○ 해외거점 및 전략적 협력사업 운영: 다자간 프로그램 참여 지원(예: Horizon Europe) 및 전략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 거점 조성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 4.

- 동 제정안의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 신설은 기존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진흥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조직 및 예산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등 기존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제정안의 관련부처인 기상청은 제정안의 과학기술국제협력 진흥원이 추진하는 업무는 「기상법」 42) 및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43)에 따라 기상청이 추진하는 기상·기후 분야 국제협력 업무 및 「기상산업진흥법」 44)에 따라

42) 「기상법」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2. 삭제 <2023. 10. 24.>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4. 인력교류
5. 공동조사·연구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기후·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 기후·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이행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지원
3. 전지구 또는 국가 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 지원
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자료·정보 등의 공동활용
5. 인력교류
6. 공동조사·연구
7.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정·설립된 기후·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의 운영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 국제협력의 대상과 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는바, 각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국제협력 업무 간에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기관별로 기능이 분산된 현행 지원 체계로는 정책지원, 사업관리, 네트워킹을 아우르는 범부처 지원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패권 대응, 연구안보 강화 등 범부처 차원의 전략성이 요구되는 정책 수립과 그 이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 4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지원·육성, 기상기술의 개발·지원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기술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6. 12. 27.>
- 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2. 27., 2024. 2. 6.>
1. 기상산업·기상기술 육성 및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2.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3. 기상산업분야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사업
 5.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 보급·실용화 촉진
 7. 기상정보 및 「기상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수집·관리·분석·제공 및 활용 촉진
 8.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9. 기상산업·기상기술 및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확산을 위한 홍보·전시·교육
 10.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검정, 형식승인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설치·점검·운영 및 장비 관련 기술지원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⑥ 정부는 기술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⑦ 정부는 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 ⑧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또한, 제정안과 같이 기관의 신설이 아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문기관 중에 진흥원을 지정하고, 전문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범부처 과학기술 국제협력 지원 기능을 총괄·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이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전담·전문화된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여러 기관이 국제협력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타 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행정적·재정적 비효율 우려가 제기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다.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 재외공관의 역할, 해외거점센터의 지정(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1) 제정안의 내용

국제협력혁신 허브(안 제16조)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연구개발특구 등 주요 연구거점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국제공동연구·인력교류·해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는 허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재외공관(안 제17조)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현지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해외거점센터(안 제19조)는 해외에서 과학기술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 간 협력의제 발굴, 국제공동연구 기획·수행, 해외 연구 동향 분석, 인력 교류 및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정부는 성과 점검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정 요건 미달·부정 수단·성과 미흡 등의 경우에는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 정 안
제16조(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 ①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행기관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제 정 안

호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3. 그 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시설·지구

②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 연구인력 교류 등의 국제협력 촉진

2. 해외 우수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③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외공관의 역할)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현지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과학기술 국제협력 해외거점센터의 지정) ①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해외거점센터(이하 “해외거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해외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제 정 안

있다.

② 해외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 간 협력의제 및 국제공동연구 과제 발굴에 관한 업무
2. 해외 과학기술·연구개발·산업 등 동향정보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
3. 간담회, 포럼 등 활동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업무
4. 외국 기술 도입 및 이전, 과학기술 인력교류에 대한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5. 해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기획·수행에 관한 업무
6. 과학기술 기반 해외 사업화 및 창업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
7. 해외거점센터 간 협업 및 소통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정부는 해외거점센터의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거점센터에 조직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해외거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성과점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⑤ 정부는 해외거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

제 정 안

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해외거점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그 밖에 해외거점센터의 설치·운영, 지정절차, 성과점검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공간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국제협력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국제협력혁신허브’를 지정하여 연구기관, 대학, 기업 간의 공동연구·인력교류·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을 규정하며, 해외에서는 협력 거점 역할을 수행할 ‘해외거점센터’를 지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상시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체계는 그동안 개별 부처나 사업 단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국제협력 사업을 거점 중심의 전략적 플랫폼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의 효율성과 파급력을 높이려는 법률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어 그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다만, 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라는 용어의 개념이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어 용어의 변경 또는 정의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 국제공동연구는 동 제정안 제2조제3호⁴⁵⁾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므로 법률안에 따라 정의된 용어로 교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또는, 국제공동연구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음.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⁴⁶⁾에서는 국제공동연구를 국내외 기관이나 개인이 연구개발 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해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경우 동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46)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국제공동연구의 정의로 사용될 개념 비교>

개념	정의	차이점
국제공동연구	○ 국제공동연구를 국내외 기관이나 개인이 연구개발 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국제공동연구는 연구개발 자원의 공동 투입이 필요하지만,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제협력 필요성 외에 자원의 공동 투입은 요구하지 않음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 4.

○ 동 제정안의 관련 부처인 **외교부**는 안 제16조의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는 「과학기술기본법」이나 이에 근거한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야 하고, 안 제17조 재외공관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외교부 소관 법규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하므로 제정안의 내용에서는 제외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9조의 해외거점센터 업무의 대부분은 재외공관 고유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설치는 정부 방침과 맞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해외거점센터의 법적 성질이 명확하지 않아 공공기관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외교부의 의견에 대해 동 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거점센터는 국제공동연구 수요 발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현지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으로서 재외공관과는 성격이 상이하며, 해외거

점센터의 지정은 현 정부 방침과 일관성 있게 과학기술 분야 해외센터 관리 체계 및 효율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임.

- 또한, 안 제16조의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에 대해서도 동 제정안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 네트워크 구축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규정하고자 하는바,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은 국제협력혁신허브와 해외거점센터를 통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공간적·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국제공동연구’ 용어 정의의 불명확성 등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 외교부는 기존 기본법 체계 활용과 해외거점 신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협력 특성을 반영한 전담 허브·거점 구축을 위해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 지정 등(안 제18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8조는 정부가 과학기술 외교를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에 과학기술국제협력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를 명예과학관으로, 재외동포가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재외한인과학자단체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각각의 임무·자격·지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8조(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에 과학기술국제협력대외직명대사(이하 “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해외 우수 연구자를 명예과학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가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외한인과학자단체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 명예과학관의 임무·자격 및 재외한인과학자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외교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를 설치하고, 해외 과학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명예과학관 및 재외한인과학자단체 지정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제 과학기술 공동체 내에 한국의 과학기술 외교 인프라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이를 통해 글로벌 협력 채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안 제15조제1항의 ‘과학기술국제협력대외직명대사’의 경우 외교관 직제나 직명은 「정부조직법」,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외교부의 직제령에서 정하는 외교부 고유 인사·직제 권한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외교부 업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물론 「북한인권법」 제9조47)에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별도의 법률에서 ‘대외직명대

47) 「북한인권법」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대외직명대사의 지정은 일반적으로 외교부와 대통령의 고유한 소관 사무인 외교 인사·조직 관리 권한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의⁴⁸⁾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大使)의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외직명대사의 지정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별도 법률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기 보다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등 외교 관련 법령 체계 내에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동 제정안의 관련 부처인 **외교부**는 대외직명대사직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될 사항이므로, 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48)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대외직명의 지정)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大使)의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지정할 수 있다

- 종합적으로 보면, 제정안이 과학기술 외교 역량과 글로벌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으나, 대외직명대사의 설치는 「정부조직법」 및 외교 관련 법령상 외교부 소관 업무와 중복될 소지가 있어 부처 간 권한 배분과 협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마.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 규제 개선 및 우수 기관 인증(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21조는 국제협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지원을 명시한 조항으로, 교육·훈련·경력개발·채용연계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의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전문인력의 우대 채용 권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안 제22조는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완화·개선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와 규정을 국제 환경 변화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23조는 국제협력 및 연구안보 역량이 우수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인증기관에 사업 참여 우대 등 지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1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 정 안

1.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력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3.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4. 국제협력 수행기관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운영
5. 그 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제협력 수행기관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우대하여 채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규제 개선) ①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점검·개선 결과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3조(우수기관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협력 및 연구안보 역량이 뛰어난 국제협력 수행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국제협력 수행기관은 대통령령으

제 정 안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국제협력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우수기관 인증의 기준·절차·유효기간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먼저, 안 제21조는 국제협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서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경력개발 등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려는 취지로, AI 분야 연구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음으로, 안 제22조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점검·개선할 책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연구자와 기관이 보다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그 취지가 긍정적임.
-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는 국제협력 수행역량과 연구안보 관리능력이 뛰어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하여, 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국제협력의 품질을 제도적으로 제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음.
- 다만, 제정안과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21조제3항이 국제협력 수행기관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우대하여 채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시행에 따른 국제협력 수행기관에 취업하려는 일반 구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제정안에 따른 특정 집단의 채용 우대가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⁴⁹⁾는 지역인재 우대 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법률은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교수·연구원 등을 채용할 때 지역 인재를 우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 인력의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대학 졸업생이나 지역 거주 연구인력에게 공정한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심각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임.
- 제정안의 규정이 비록 권고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동 제정안에서 규정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우대 채용 조항이 지역인재 채용과 동일한 수준의 공익적 필요성과 정책적 시급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국제협력 수행기관에 속하는 대학, 연구소 등의 한정된 신규 채용 규모를 고려할 때, 특정 집단의 우대가 다른 구직자의 기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신중히 평가해야 할 것임.
- 둘째, 안 제23조제4항의 거짓 인증표시 금지 규정에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제재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해당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예: 과태료 부과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제정안의 관련 부처인 **외교부**는 해당 부분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이에 근거한 시행령 등에 추가할 사항으로 별도의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외교부의 의견에 대해 동 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제정안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 네트워크 구축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바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은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전문인력 우대 채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거짓 인증표시에 대한 제재 규정 미비 등 법령상 제도 설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제5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가. 외국정부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 등(안 제24조 및 제25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2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국정부와의 협의회 구성, 약정·MOU 체결, 전문가 및 공무원 파견, 개도국 대상 기술지원·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외교부와 협의하도록 하며, 관련 법인·단체·개인이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는 정부는 기업·대학·연구소 등 국제협력주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 기획, 전문인력·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보유자원의 공동활용, 성과 확산 및 기술이전, 연구개발인력의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가 국내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4조(외국정부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외국정부와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약정·양해각서 등의 체결

3.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해외파견

4.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와 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제25조(기업·대학·연구소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① 정부는 국제협력주체와 해외기관등 간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공동연구 기획·수행

2. 분야별 전문인력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연구시설·장비·연구개발정보 등 보유자원의 공동 활용 촉진

4.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기술이전·실용화 및 기술창업 지원

5.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제

② 정부는 국제협력주체와 해외기관등 간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성과가 국내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국가 전략 차원의 외교·산업·인적 네트워크 기반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4조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정부 간 과학기술 외교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연구·산업·인력 교류 등 국제협력의 외교적 창구를 공고히 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인력양성을 통해 국제 사회 내 과학기술 파트너십과 공공외교 효과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25조는 기업·대학·연구소 등 민간 및 공공 부문이 주체적으로 국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산·학·연 연계형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통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단순 교류를 넘어 산업적 파급력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함.
- 다만,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안 제24조의 외국 정부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뿐 아니라, 개도국과의 인력·기술·재원 등 유·무형 자산을 포함한 연구개발 ODA 성격의 사업과 외국과의 과학기술 협정 체결, 정부 간 협의체 구성 및 협의체 체결을 위한 인력 파견 등의 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내용은 「정부조직법」상 외교부의 소관 업무인 국제관계 및 조약·협정 등과 관련된 사무에 해당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 분야 국제협약·협정의 체결·이행 관련 업무 및 국가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과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정부조직법」 제33조⁵⁰⁾에 따라 경제외교, 국제경제협력외교, 그리고 국제관계 조정 업무는 외교부의 고유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한 해당 조항의 집행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 간 업무 범위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조항의 ‘협의’만으로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업무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동 제정안의 관련 부처인 **외교부**는 안 제24조의 외국정부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의 경우에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강제 의무화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이나 이에 근거한 시행령 등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외교부의 의견에 대해 동 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

50) 「정부조직법」 제33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술정보통신부는 동 제정안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 네트워크 구축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규정하고자 하는바,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둘째, 안 제24조제1항제3호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관계 공무원의 외국정부로의 파견’에 관한 업무는 「정부조직법」 제24조⁵¹⁾나 제33조⁵²⁾에 따른 인사혁신처 및 외교부의 소관 업무와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 제정안에서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만 명시한 현행 규정에 ‘인사혁신처장’도 협의 절차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제정안의 관련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파견(국내 및 해외)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에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 임용령」 제40조 등에 파견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의 세부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 명시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1) 「정부조직법」 제24조(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2) 「정부조직법」 제33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이에 대해 동 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기존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제정안 상에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사혁신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외교·산업·인적 네트워크로 확장하여 과학기술 외교 역량과 글로벌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어 타당성이 있으나, 외국 정부와의 협력 추진, 공무원 해외 파견 등은 「정부조직법」 및 외교 관련 법령상 외교부·인사혁신처 소관 업무와 중복될 소지가 있어 부처 간 권한 배분과 협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다자간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 활성화 및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등(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26조는 정부는 국제협력주체가 다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국제기구 설립 및 행사 유치,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 27조는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표준 형성에의 참여 및 이에 관한 전문가 의견의 체계적 수렴·반영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28조는 정부가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내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② 연구인력 훈련 및 고용, ③ 입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 요건과 지원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9조는 정부는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① 연구개발사업 참여와 연구장려금 지원, ② 자녀 교육·보육 지원, ③ 한국어·문화 교육, ④ 주거 및 금융·행정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자에 대해서는 사증(비자) 발급 절차나 체류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이민 절차 완화 등도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6조(다자간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 활성화 등) ① 정부는 국제협력 주체의 다자간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을 장려하고, 국제협력주체가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자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 및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국제기구에 국내 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과학기술 국제규범 및 표준) ①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표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표준의 형성에 관하여 국제협력 수행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표준의 형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① 정부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훈련 및 고용

3. 국내에 진출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입지 지원

4. 그 밖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요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치) ① 정부는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연구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외 연구자의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외 연구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6. 해외 연구자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외 연구자 유치·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해외 연구자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된 해외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민 절차의 완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글로벌 연구 생태계 속에서 우수 해외연구기관의 유치로 우리나라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안 제26조는 다자간 과학기술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국제기구 참여 및 유치를 통해 국제사회 공헌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안 제27조는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국제 규범 및 표준의 형성에 참여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안 제28조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연구환경의 개방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안 제29조는 해외 연구자에게 연구활동, 거주, 교육, 비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세계적 인재가 국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 유입 기반을 강화하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다만, 안 제29조제2항에서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를 ‘해외 연구자’ 중 어느 범주에 한정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 규정의 직접적인 해석에 따르면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모든 해외 연구자가 해당 조항의 특례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음.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1조의2제3항⁵³⁾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중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 발급 절차와 1회 부여 가능한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용 대상을 우수한 인재로 한정하여 특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제정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우수 연구자 등으로 특례가 되는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1조의2(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중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 시 출입국 특례 관련 입법례>

기관명	조항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주요 기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육성)	○ ① 정부는 <u>핵심적인 정보통신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해외 우수 인력</u> 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이민 절차의 완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0조제2항 (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 ② 법무부장관은 <u>첨단산업과 관련된 우수 해외인재</u> 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민 절차의 완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4조제1항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 ① 정부는 <u>소재·부품·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u> 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4. 해외 우수인력의 취업과 이민절차 등 행정절차의 완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1조의2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 ① 정부는 <u>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u> (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 4.

- 안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가 해외연구자의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유아교육비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국민’에 한하여 지원 중으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등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해외 우수 연구자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할 경우 타 외국인 자녀와 형평성 문제 등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⁵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자녀에게 국민과 동등한 초·중등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오히려, 제정안과 같이 정규교육에 관해 별도의 지원을 하게 된다면 국내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로 역차별 논란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 교육부의 의견에 대해 동 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패권 경쟁 속 우수 연구인력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현행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⁵⁵⁾

54)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가 우수 해외인재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정규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과 같은 특례 규정이 필요하며, 형평성 문제는 하위법령 통해 추후 보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은 다자간 협력과 국제기구 참여 확대,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해외 연구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역량과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하나, 출입국·체류 특례의 적용 대상을 우수 연구자로 한정하여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해외연구자의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반된 의견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55)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2.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해외인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조성
 6. 해외인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7. 해외인재의 입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8. 그 밖에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해외인재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과제를 이행·점검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지원 및 포상(안 제30조 및 제31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도록 하고, 외국 도시와의 국제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관련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연구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3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

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및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지역 소재 기업·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31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안 제30조는 국가 중심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지역 단위로 확장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과학기술 국제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함.

-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 외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국제 네트워크 형성, 지역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체계 구축,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 촉진 등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국제적으로 연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또한, 안 제31조와 같이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⁵⁶⁾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할 책무가 있어, 안 제30조의 내용이 기존 시책과 기능상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제도의 역할 구분과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이나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7호⁵⁷⁾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예시로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국제교류 및 협력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근거 규정(안 제30조제3항)이 없더라도, 지역 소재 기업·대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

56)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57)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체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미 「과학기술기본법」상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과 「지방자치법」상 국제교류·협력 사무 범위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제도와의 역할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지역 주체들과 협력체를 구성해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7. 제6장 연구안보 수립

가. 연구안보 강화 지원과 전략 수립(안 제32조 및 제33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32조는 정부가 국제협력주체의 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자문·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연구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경제 안보상 중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33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연구안보 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연구안보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분석하여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2조(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국제협력주체의 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자문, 전문인력 양성, 연구안보 국제협력 활동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연구안보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의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연구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상 중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

략적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국제협력주체의 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연구안보 전략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안보 위험요소에 대한 적기 대응 등 연구안보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안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안보 관련 국내외 동향과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안보 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안보 전략 수립 및 관련 동향과 정보의 수집·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안보(Research Security)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에 따라 기술 유출, 경제안보 침해, 연구윤리 훼손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정부가 연구안보 교육·전문인력 양성·국제규범 참여 등 종합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연구안보 전략의 수립·시행 의무와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사전 예방적·전략적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핵심기술의 보호 및 연구생태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33조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연구안보 전략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면서, ‘연구안보 위험요소에 대한 적기 대응’이라는 목적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전략 수립 필요 사유 또는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예: 연구안보 위험요소 식별·평가, 대응체계 구축 등)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연구안보 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이를 위임하여 전략 수립의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둘째, 안 제33조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안보 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국가안보 정보 수집, 기술유출 대응, 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정부조직법」 제2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2조제2항⁵⁸⁾에서는 부·처·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정보원은 같은 법 제17조⁵⁹⁾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중앙행정기관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연구안보 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의 협의 필요성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요구되며, 국가정보원과의 협의를 제정안에 포함할 경우 입법 방식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

58)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59)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에 따라 증대되는 기술유출·경제안보 침해 등 연구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연구안보 교육·전문인력 양성·전략 수립 및 정보분석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예방적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함.
- 다만, 연구안보 전략의 수립 주기와 필수 구성요소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고, 국가안보 정보와 직결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이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략 수립 기준을 구체화하고 협의 대상에 국가정보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나. 국제협력주체의 연구안보 유지 의무(안 제34조)

1)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은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국제협력주체)는 연구성과 유출 등 연구안보 관련 위협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협력 수행기관은 국외 연구기관 파견이나 출장을 앞둔 연구자에게 연구안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4조(국제협력주체의 연구안보 유지 의무) ① 국제협력주체는 연구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안보와 관련된 위협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 수행기관은 연구성과 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안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제협력 수행기관은 소속 임직원 중 국외 연구기관 파견근무, 국외출장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예정된 사람에게 연구안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국제공동연구나 해외 연구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성과 유출, 기술 침해, 정보보안 사고 등 연구안보 위협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구안보 위협 발생 시 보고 의무를 명문화하여 정부가 조기에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사전 교육·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연구자 개인의 보안 인식 제고와 국제협력 과정에서의 기술·정보 유출 방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해당 조항은 국가 연구자산 보호 및 국제협력 신뢰 확보를 위해 <예방적 보안관리 - 사후적 대응체계>를 결합한 종합적 연구안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안 제34조제2항은 국제협력주체가 연구성과 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안보 위협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즉시’의 범위가 위협 발생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등 보고의무 이행 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 보임.

- 특히, 연구안보 위협 발생 시 보고 의무 규정은 국제협력주체에 있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를 침익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의 명확성을 더 기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은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 연구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성과 유출·기술 침해·정보보안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안보 위협 발생 시 보고 의무와 연구자 사전 교육·훈련을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조기 대응과 연구자 보안 인식 제고를 통해 예방적·사후적 연구안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나, 연구안보 위협 발생 시 ‘즉시’ 보고의 의미와 기한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명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8. 제7장 보칙

가. 청문,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35조는 해외거점센터 지정 취소(제19조제5항) 또는 우수기관 인증 취소(제23조제5항)를 할 때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안 제3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소속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37조는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은 해당 업무 수행 시 형법상 뇌물에 관련된 범죄(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되도록 한 규정임.

제 정 안
제35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해외거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정 안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전략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특별위원회의 위원
3. 제15조에 따른 진흥원의 임직원
4.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제도의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음.
- 안 제35조는 해외거점센터 지정 취소나 우수기관 인증 취소와 같은 불이익 처분 시 청문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그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안 제3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역량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음.
- 안 제37조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과 전략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진흥원의 임직원 등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나 비리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위탁사무 수행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36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⁶⁰⁾ 중 일부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형법」 제127조⁶¹⁾의 공무원 비밀 누설죄도 벌칙 적용에

6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1)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있어서 공무원 의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에서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⁶²⁾까지의 규정 등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적용할 때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제외되어 있음.
- 동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연구안보 및 국가 간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연구데이터나 연구성과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등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 벌칙에 포함하여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62)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도의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불이익 처분 시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여 방어권과 행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권한의 위임·위탁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입법취지가 타당함.

- 다만, 위임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조항 제목도 권한 위임을 포함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안보와 직결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 의제의 적용 범위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까지 포함시켜 법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9. 벌칙

가. 과태료

1)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은 국제협력 수행기관이 ① 연구안보특별위원회가 연구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당 기관에 요구한 시정조치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와 ② 연구안보에 대한 위협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안보 위협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연구안보의 중대한 위협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의 필요성이 인정됨.
- 따라서, 제정안이 해당 보고를 위반한 국제협력 수행기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10. 부칙

가. 시행일(안 부칙)

1) 제정안의 내용

안 부칙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이미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와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근거하여 각 부처별로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칙에서 진행 중인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과 새 법의 적용되는 사업 간의 법적인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제도 하에서 수행 중인 사업이 제정안 시행 이후 어떤 법적 체계와 절차를 적용받는지를 명시함으로써, 법령 간 충돌을 방지하고 현행 사업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 특히, 동 제정안에서 안 제12조제3항⁶³⁾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에서 국가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정안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제 공동연구 과제의 경우 기존 협약 요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수범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향후 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5

63)제12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한민국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정의)** Lead Agency란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과학기술 협력사업(Joint Call)에서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연구지원기관을 의미하며, Lead Agency로 지정된 기관이 접수, 평가, 사업관리 등을 총괄함.
 - Lead Agency는 국제공동연구의 평가 및 선정 관련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현황)** 미국 및 유럽 선진국*은 국제공동연구모델로서 Lead Agency를 적극 도입 중이며, 한국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제안 시 동 모델의 도입을 요청함.
 - *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연구사업, 한-스위스 이노베이션사업, 한-미국 공동연구사업을 Lead Agency 모델 형태로 제안 받음
 - **(북미)** 미국의 NSF(National Research Foundation)는 주로 유럽의 대표 선진국인 영국의 UKRI(UK Research & Innovation), EPSRC(과학공학위원회, 독일의 DFG, 프랑스의 ANR(France National Research Agency), 스위스 SNSF(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등과 Lead Agency Agreement를 체결
 - **(유럽)** 스위스 SNSF 또한 프랑스 ANR, 이스라엘 ISF(Israel Science Foundation), 브라질 FAPESP(Sao Paulo Research Foundation), 남아공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미국 NSF 등과 활발하게 Lead Agency 사업 추진
 - **(아시아)** 일본 JSPS가 미국 NSF, 영국 UKRI, 독일 DFG 등과 동 형태 사업 추진
- **(의의)** 참여국의 개별연구진들은 공통된 하나의 연구계획서만을 작성하여 연구자 편의 도모하고, 신청·평가절차를 Lead Agency가 전담하므로 사업관리 비용이 절감됨. 또한,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Lead Agency 방식의 국제공동연구를 선호하므로 해당 국가와 국제협력 기회가 확대됨.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사업을 말한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국외현지연구·협력센터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유치 지원사업
 - 나. 교포 과학기술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활용 및 국내 과학기술자의 해외파견 등 과학기술인력의 교류사업
 - 다. 외국과학기술정보의 수집·활용사업
 - 라. 다자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등에의 참여사업
 - 마.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조성사업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3. 삭제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제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사업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
3. 주요 전문분야별 기술조사단의 상호 파견 및 공동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6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 ①전문기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연구개발결과 등 주요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개발 관련정보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기관 또는 단체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상 취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